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30호

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 외 21명

다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,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·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하거나 성희롱·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(안 제5조 제4호 및 같은 조제6호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자가 삭제 조치할 수 있는 부적절한 게시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특정인을 비방하거나</u>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. (생략) 6. <u>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. ~ 9. (생략)	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</u> ---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성희롱·폭언·욕설</u>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

(2)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현황

-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유게시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, 이는 공식적인 민원, 문의, 신고 등과 구분되는 자율적인 의견 개진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음.
-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, 자유게시판에는 2년간 총 8,564건의 게시글이 등록되었고, 따라서 일평균 11.7개의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음.

- 다만, 이 중 3,536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므로 5,028건(일 평균 6.9개)만이 정상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음.

○ 정상 등록된 5,028건의 게시물 중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블라인드(관리자 삭제) 처리가 된 게시물은 2,240건(44.6%)으로 대부분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었음.

< 자유게시판 블라인드 처리 현황 >

(단위: 건)

합계	상업성광고 저작권침해	국가안전 및 보안 위협	정치적 목적	반복적인 게시물	특정인 비방이나 명예훼손	불건전 게시물
2,240	1,839	1	2	370	22	6

○ 이처럼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조례상 부적절하다 판단 되는 게시물이 등록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.

(3)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

○ 동 개정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, 비하, 모욕성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(제5조제4호), 성희롱, 폭언 게시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(제5조제6호) 제안하고 있음.

○ 해당 내용은 기존 조례의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,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조치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입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조례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중 현저히 높은 비율이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고, 정상 게시된 게시물의 대다수가 민원성 의견임을 고려할 때, 자유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홍민지(2180-8118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의안번호
2730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	안건 소관 상임위		규제철폐 안건	
	이종환(대표발의)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해당없음	
주요내용	〈개정 필요성〉 ○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·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〈주요 개정내용〉 ○ 제5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규정 중 제4호 “특정인을 비방하거나”를 “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”로, 같은 조 제6호 “욕설”을 “성희롱·폭언·욕설”로 개정하여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					
추진경과	○ '25. 5.26. 조례개정안 의원 발의 ○ '25. 6. 3. 조례개정안 입법예고	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개정조례안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므로,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준 강화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단됨					
대응방안	○ 필요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	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			
담당부서	콘텐츠담당관		팀장	조현정(☎2133-6500)	담당	장미희(☎2133-6515)